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가합541658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 고 1. A 주식회사

2. B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6. 10.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4,944,363원 및 그 중 301,779,269원에 대하여 2021. 6. 8.부터 2021. 11. 13.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3. 피고 B는 피고 A 주식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 12. 2. 접수 제118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가) 원고는 2019. 8. 3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차용하는 3억 5,000만 원의 기업일반자금대출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297,500,000원, 보증기간 2019. 8. 30.부터 2022. 8.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는 신용보증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채무를 보증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

2) 피고 회사와 피고 B 사이의 매매예약 및 가등기

가) 피고 B는 2020. 12.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억 5,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피고 B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때 매매계약이 성립하며 피고 회사가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피고 B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되,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2020. 12. 20. 전까지 지급하고, 피고 회사의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2021. 3.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 12. 2. 접수 제1182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2021. 12. 31. 피고 회사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신용보증사고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는 2021. 1. 25. 사실상 폐업 등으로 위 대출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21. 6. 8.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주식회사 C에 위 대출 채무의 원금 297,500,000원과 이자 4,279,269원의 합계 301,779,269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인 2021. 6. 8. 발생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9. 8. 3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2021. 1. 25. 사실상 폐업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20. 12. 1.자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21. 6. 8.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회사는 D 주식회사에 1,775,000,000원, 주식회사 C에 350,000,000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2,069,782,9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피고 B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예약은 매매대금을 1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예정하고 있는데,
매매대금 15억 5,000만 원 중 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정하고
있는바, 매매대금에 비해 이례적으로 적은 액수를 계약금으로 정하고 있는 점, 예약금이나 계약금에
대한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가등기가 먼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희, 판사 신동헌, 판사 신유리

별지